응봉면행정복지센터 정기감사 결과보고

《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8. 10. 16. ~ 10. 18.(3일간)

○ 감 사 반 : 8명(감사팀장외 7명)

○ 감사범위 : 2016년 10월 이후 면정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 세출, 물품관리, 각종 공사 적법처리 여부

- 복지, 세무, 농·축산업, 산업분야 등 대민업무 추진사항등

□ 감사결과

일련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16건	16	12	4	
1	총무팀	세외수입(계속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소홀	1	1		
2	총무팀	일숙직근무시간 미준수	1		1	
3	총무팀	연체료 집행 부적정	1	1		
4	총무팀	수입 인지·증지 미소화	1	1		
5	총무팀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1	1		
6	총무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1	1		
7	총무팀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미공개	1	1		
8	총무팀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소홀	1		1	
9	총무팀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확인 소홀 및 대가지급 부적정	1	1		
10	총무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부적정	1		1	
11	맞춤형복지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관리업무 소홀	1	1		
12	맞춤형복지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업무 소홀	1	1		
13	산업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홍보 소홀	1	1		
14	산업팀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및 홍보 소홀	1		1	
15	산업팀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관리카드 관리 소홀	1	1		
16	산업팀	산불진화장비 대장 관리 소홀	1	1		

□ 주요지적사례

▣ 세외수입(계속도로점용료)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소홀

○ 「도로법」 69조에 따르면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독촉'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33조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재무과-29993(16.10.20)호외 5회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 대책 수립하도록 통보하였다.

○ 응봉면에서는 14건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일숙직자 퇴근시간 미준수

○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재택근무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외 3시간을 근무 후 귀가 근무자로 숙직근무자는 18시부터 21시까지 대기 하여야 하여야 하고 일직근무자는 9시까지 출근하여 12시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일·숙직자가 규정된 일·숙직 근무시간을 미준수하고 일찍 퇴근 한 사실이 있다.

▣ 연체료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전기료, 법인카드 연체료에 대하여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수입인지·증지 미소화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일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0,000원의 수입인지를 소화해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2건에 대하여 수입인지를 미소화한 사실이 있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1.5%, 건설공사·용역계약은 2.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응봉면에서는 3건에 24,416천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00천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부족하게 받은 사실이 있음.

▣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미사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 6.84%(할인 5.74%, 포인트적립 1.1%) 혜택 받은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 응봉면에서는 응봉관내에 공공조달 주유소가 있으면서도,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을 받지 않아 6.84%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업무추진비 및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계획』(기획실-9251,2015.9.8.)에 따라 매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기획실-7687,2016.7.11.), (기획실-3578,2017.3.31.)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 응봉면에서는 2017년 4월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르면 결정금액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해 규격 및 설계서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법의 특수성등 특별한 경우에만 견적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응봉면에서는 ‘응봉면사무소 오수처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콘크리트 절단·깨기, 폐기물 처리등의 공정에 대하여 표준품셈에 따라

원가계산이 가능함에도 사업자의 견적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확인 소홀 및 대가지급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3항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9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응봉면에서는 4천만원미만의 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준공서류 접수시 별다른 조치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반기별로 관리 및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시설 수급자의 급여계좌로 같이 사용하여 적정성 여부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영수증 징구없이 통장사본내역 및 지출내역 등으로만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급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②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

사용자동차표지의 발급 등)에 의하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는 표지를 발급하게 되어있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장애인사망과 이사등으로 차적이 변경되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무효처리대상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홍보 소홀

○ 2019.1.1.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는 농약 검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농업인에게 홍보를 하여야 한다.

○ 농정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으로 홍보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응봉면에서는 이장등에게 홍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및 돌발해충 관련 홍보 소홀

○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문과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결정 알림 공문은 마을에 홍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별도로 홍보하지 않는등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관리카드 관리 소홀

○ 「2018년 축산사업 FTA 폐업지원제 사업(축산분야)」 폐업(한우)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에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및 매년 2회 이상 쇠고기 이력제 조회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폐업지원관리카드를 별도 비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산불 진화장비 관리 업무 소홀

○ 산림축산과-6691(2015. 3. 9.)호, 산림축산과-9668(2016. 4. 11.)호, 산림축산과-34208(2017. 11. 30.)호 관련하여 산불진화용 장비를 배부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달 하였고, 산불장비로 수령 후 자동분사형 등짐펌프 외 4종에 대하여 수령즉시 산불장비 관리 대장에 기록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 응봉면에서는 산불 진화장비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산불예방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